

제2025-84호 2025년 9월 18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41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1
○ 여수시 고시	제2025-421호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상암천)(제2025-13호)	8
○ 여수시 고시	제2025-423호	도로명 주소 부여·폐지	10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752호	도로지정(변경)[율촌면 산수리 1061번지 외 3필지]	11
○ 여수시 공고	제2025-2754호	남해 서면 여수 신역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환경결정(변경) 및 사업안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13
○ 여수시 공고	제2025-276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여수시 봉산동 퍼스트힐 신축공사)	14
○ 여수시 공고	제2025-2772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조정금 부과예정일림 반송분 공사송달	24
○ 여수시 공고	제2025-2776호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사송달	25
○ 여수시 공고	제2025-2784호	2025년 양식시설 현대화(용자)사업 모집 (2차)	26
○ 여수시 공고	제2025-2785호	국동항 내 무단 적치물 제거	30
○ 여수시 공고	제2025-2787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조정금 부과 예정 일림 반송분 공사송달	38
○ 여수시 공고	제2025-2790호	도로지정(공화동 837번지 외 8필지)	39

회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 9. 18.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문수동 67-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사업
- 나. 명 칭 : 문수주택단지 도시계획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 기정) 14,314.7㎡ → 변경) 14,839.8㎡
- 나. 규 모

- 1) 기정: (소로1-405)L=450m, B=10m, (소로2-1458)L=24m, B=8m, (소로2-1459)L=56m, B=8m, (소로2-1460)L=56m, B=8m, (소로2-1461)L=56m, B=8m, (소로3-1115)L=50m, B=6m, (소로3-1116)L=50m, B=6m, (소로3-1117)L=20m, B=6m, 주차장 5,458㎡, 공원 2,338㎡
- 2) 변경: (소로1-405)L=450m, B=10m, (중로3-150)L=24m, B=14m, (소로2-1459)L=56m, B=8m, (소로2-1460)L=56m, B=8m, (소로2-1461)L=56m, B=8m, (소로3-1115)L=50m, B=6m, (소로3-1116)L=50m, B=6m, (소로3-1117)L=20m, B=6m, (소로3-1120)L=83m, B=2m, 주차장 5,983㎡, 공원 2,362.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ㄱ기정: 2018. 8.31.~2025. 6.30.

ㄴ변경: 2018. 8.31.~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소로	1	405	10	국지	450	소2-1462 문수동 67-1대	소3-1131 문수동 85-11도	일반 도로	여고-189 18. 6.21.	
변경	소로	1	405	10	국지	450	소2-1462 문수동 67-1대	소3-1131 문수동 85-1대	일반 도로	여고-189 18. 6.21.	
당초	소로	3	1115	6	국지	50	소1-405 문수동 74-10대	소3-1142 문수동 73-23대	일반 도로	여고-189 18. 6.21.	
변경	소로	3	1115	6	국지	50	소1-405 문수동 74-1대	소3-1142 문수동 73-23대	일반 도로	여고-189 18. 6.21.	
당초	소로	3	1117	6	국지	20	소1-405 문수동 69-8대	소3-1141 문수동 69-24대	일반 도로	여고-189 18. 6.21.	
변경	소로	3	1117	6	국지	20	소1-405 문수동 69-1대	소3-1141 문수동 69-25대	일반 도로	여고-189 18. 6.21.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1-405	소로 1-405	◦ 도로 종점 변경 - 지정: 문수동 85-11 - 변경: 문수동 85-1	◦ 토지 및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종점 지번 변경
소로 3-1115	소로 3-1115	◦ 도로 기점 변경 - 지정: 문수동 76-10 - 변경: 문수동 76-1	◦ 토지 및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지번 변경
소로 3-1117	소로 2-1460	◦ 도로 기점 및 종점 변경 - 지정: 문수동 69-8, 문수동 69-24 - 변경: 문수동 69-1, 문수동 69-25	◦ 토지 및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및 종점 지번 변경

3)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당초	변경	당초	증감	변경		
145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53-8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53-8대 일원	820	증)0.6	820.6	여고-189 18. 6.21.	
147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58-8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58-37대 일원	143	감)0.1	142.9	여고-189 18. 6.21.	
148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59-8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59-37대 일원	143	감)0.3	142.7	여고-189 18. 6.21.	
149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58-18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58-38대 일원	193	증)0.3	193.3	여고-189 18. 6.21.	
150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59-18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59-38대 일원	171	-	171.0	여고-189 18. 6.21.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당초	변경	당초	증감	변경		
151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76-8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76-33대 일원	132	감)0.6	131.4	여고-189 18. 6.21.	
152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75-9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75-30대 일원	130	감)0.1	129.9	여고-189 18. 6.21.	
153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67-6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67-21대 일원	604	증)0.2	604.2	여고-189 18. 6.21.	
154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69-5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69-33대 일원	442	감)0.3	441.7	여고-189 18. 6.21.	
155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69-13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69-34대 일원	676	증)0.1	676.1	여고-189 18. 6.21.	
156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74-5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74-33대 일원	489	증)0.7	489.7	여고-189 18. 6.21.	
157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74-13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74-34대 일원	436	증)0.1	436.1	여고-189 18. 6.21.	
158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85-7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85-23대 일원	736	감)0.4	735.6	여고-189 18. 6.21.	
159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73-2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73-2대 일원	91	증)0.3	91.3	여고-189 18. 6.21.	
160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73-8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73-33대 일원	128	감)0.1	127.9	여고-189 18. 6.21.	
161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73-9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73-34대 일원	61	-	61.0	여고-189 18. 6.21.	
162	주차장	여수시 문수동 72-1대 일원	여수시 문수동 72-1대 일원	490	감)0.4	489.6	여고-189 18. 6.21.	

4)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5	주차장	◦면적 변경 - 지정: 820㎡ → 변경: 820.6㎡ 증)0.6㎡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47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위치 정정 - 지정: 143㎡, 문수동 58-8대 일원 - 변경: 142.9㎡ 감)0.1㎡, 문수동 58-37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48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위치 정정 - 지정: 143㎡, 문수동 59-8대 일원 - 변경: 142.7㎡ 감)0.3㎡, 문수동 59-37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49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위치 정정 - 지정: 193㎡, 문수동 58-18대 일원 - 변경: 193.3㎡ 증)0.3㎡, 문수동 58-38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50	주차장	◦위치 정정 - 지정: 문수동 59-18대 일원 - 변경: 문수동 59-38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51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위치 정정 - 지정: 132㎡, 문수동 76-8대 일원 - 변경: 131.4㎡ 감)0.6㎡, 문수동 76-33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52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위치 정정 - 지정: 130㎡, 문수동 75-9대 일원 - 변경: 129.9㎡ 감)0.1㎡, 문수동 75-30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53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위치 정정 - 지정: 604㎡, 문수동 67-6대 일원 - 변경: 604.2㎡ 증)0.2㎡, 문수동 67-21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54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위치 정정 - 지정: 442㎡, 문수동 69-5대 일원 - 변경: 441.7㎡ 감)0.3㎡, 문수동 69-33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55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위치 정정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정: 676㎡, 문수동 69-13대 일원 - 변경: 676.1㎡ 증)0.1㎡, 문수동 69-34대 일원	
156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위치 정정 - 지정: 489㎡, 문수동 74-5대 일원 - 변경: 489.7㎡ 증)0.7㎡, 문수동 74-33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57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위치 정정 - 지정: 436㎡, 문수동 74-13대 일원 - 변경: 436.1㎡ 증)0.1㎡, 문수동 74-34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58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위치 정정 - 지정: 736㎡, 문수동 85-7대 일원 - 변경: 735.6㎡ 감)0.4㎡, 문수동 85-23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59	주차장	◦면적 변경 - 지정: 91㎡ → 변경: 91.3㎡ 증)0.3㎡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60	주차장	◦면적 변경 및 위치 정정 - 지정: 128㎡, 문수동 73-8대 일원 - 변경: 127.9㎡ 감)0.1㎡, 문수동 73-33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61	주차장	◦ 위치 정정 - 지정: 문수동 73-9대 일원 - 변경: 문수동 73-34대 일원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위치 변경
162	주차장	◦면적 변경 - 지정: 490㎡ → 변경: 489.6㎡ 감)0.4㎡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13	공원	문화공원	여수시 문수동 68-1대 일원	2,362	증) 0.4	2,362.4	여고-189 18. 6.21.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3	공원	◦ 면적 변경 -지정: 2,362㎡ -변경: 2,362.4㎡, 증) 0.4㎡	◦지적분할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40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3필지			24,181.7	14,314.7						당초
	51필지			24,705.9	14,839.8						변경
1	문수동	67-1	대	492.8	492.8	여수시					당초
1	"	67-1	대	492.8	492.8	여수시					변경
2	"	67-21	대	604.2	604.2	여수시					당초
2	"	67-21	대	604.2	604.2	여수시					변경
3	"	69-1	대	801.8	801.8	여수시					당초
3	"	69-1	대	801.8	801.8	여수시					변경
4	"	69-33	대	386.9	386.9	여수시					당초
4	"	69-33	대	386.9	386.9	여수시					변경
5	"	69-34	대	491.8	491.8	여수시					당초
5	"	69-34	대	491.8	491.8	여수시					변경
6	"	74-1	대	781	781	여수시					당초
6	"	74-1	대	781	781	여수시					변경
7	"	74-33	대	425.1	425.1	여수시					당초
7	"	74-33	대	425.1	425.1	여수시					변경
8	"	74-34	대	406.2	406.2	여수시					당초
8	"	74-34	대	406.2	406.2	여수시					변경
9	"	82-6	대	330	330	여수시					당초
9	"	82-6	대	330	330	여수시					변경
10	"	85-1	대	582	582	여수시					당초
10	"	85-1	대	582	582	여수시					변경
11	"	85-23	대	735.6	735.6	여수시					당초
11	"	85-23	대	735.6	735.6	여수시					변경
12	"	94-1	도	6,172	1,068	여수시					당초
12	"	94-1	도	5983.4	879.8	여수시					변경
13	"	94-4	도	188.2	188.2	여수시					변경
13	"	94-2	도	5,958	1,195	여수시					당초
14	"	94-2	도	5887.1	1124.6	여수시					변경
15	"	94-5	도	70.4	70.4	여수시					변경
16	"	72-2	대	106.7	106.7	여수시					변경
17	"	72-3	대	106.6	106.6	여수시					변경
18	"	72-4	대	106.6	106.6	여수시					변경
14	"	75-8	대	233.5	233.5	여수시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	75-8	대	233.5	233.5	여수시					변경
15	"	75-30	대	129.9	129.9	여수시					당초
20	"	75-30	대	129.9	129.9	여수시					변경
16	"	76-8	대	231.1	231.1	여수시					당초
21	"	76-8	대	231.1	231.1	여수시					변경
17	"	76-33	대	131.4	131.4	여수시					당초
22	"	76-33	대	131.4	131.4	여수시					변경
18	"	58-18	대	31.5	31.5	여수시					당초
23	"	58-18	대	31.5	31.5	여수시					변경
19	"	58-38	대	97	97	여수시					당초
24	"	58-38	대	97	97	여수시					변경
20	"	58-19	공	25.8	25.8	여수시					당초
25	"	58-19	공	25.8	25.8	여수시					변경
21	"	58-39	공	96.3	96.3	여수시					당초
26	"	58-39	공	96.3	96.3	여수시					변경
22	"	59-18	대	51.9	51.9	여수시					당초
27	"	59-18	대	51.9	51.9	여수시					변경
23	"	59-38	대	171	171	여수시					당초
28	"	59-38	대	171	171	여수시					변경
24	"	58-8	대	219.8	219.8	여수시					당초
29	"	58-8	대	219.8	219.8	여수시					변경
25	"	58-37	대	142.9	142.9	여수시					당초
30	"	58-37	대	142.9	142.9	여수시					변경
26	"	59-8	대	219.4	219.4	여수시					당초
31	"	59-8	대	219.4	219.4	여수시					변경
27	"	59-37	대	142.7	142.7	여수시					당초
32	"	59-37	대	142.7	142.7	여수시					변경
28	"	73-8	대	175.8	175.8	여수시					당초
33	"	73-8	대	175.8	175.8	여수시					변경
29	"	73-33	대	127.9	127.9	여수시					당초
34	"	73-33	대	127.9	127.9	여수시					변경
30	"	73-34	대	61	61	여수시					당초
35	"	73-34	대	61	61	여수시					변경
31	"	74-24	대	87.5	87.5	여수시					당초
36	"	74-24	대	87.5	87.5	여수시					변경
32	"	74-35	대	64.6	64.6	여수시					당초
37	"	74-35	대	64.6	64.6	여수시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3	"	74-36	대	29.9	29.9	여수시					당초
38	"	74-36	대	29.9	29.9	여수시					변경
34	"	69-17	대	129.7	129.7	여수시					당초
39	"	69-17	대	129.7	129.7	여수시					변경
35	"	69-25	대	90.2	90.2	여수시					당초
40	"	69-25	대	90.2	90.2	여수시					변경
36	"	69-35	대	54.8	54.8	여수시					당초
41	"	69-35	대	54.8	54.8	여수시					변경
37	"	69-36	대	54.6	54.6	여수시					당초
42	"	69-36	대	54.6	54.6	여수시					변경
38	"	72-1	대	99.3	99.3	여수시					당초
43	"	72-1	대	99.3	99.3	여수시					변경
39	"	73-2	대	91.3	91.3	여수시					당초
44	"	73-2	대	91.3	91.3	여수시					변경
40	"	53-8	대	615.4	615.4	여수시					당초
45	"	53-8	대	615.4	615.4	여수시					변경
46	"	53-5	대	205.2	205.2	여수시					변경
41	"	52-7	대	98	98	여수시					당초
47	"	52-7	대	98	98	여수시					변경
42	"	65-1	대	767.7	767.7	여수시					당초
48	"	65-1	대	733.4	733.4	여수시					변경
49	"	65-7	대	34.3	34.3	여수시					변경
43	"	68-1	대	1,542.4	1,542.4	여수시					당초
50	"	68-1	대	1,440.8	1,440.8	여수시					변경
51	"	68.40	대	101.6	101.6	여수시					변경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상암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8일

여수시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내역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m ²)	점용목적	점용기간	
2025-13	상암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41, 2023호(치평동, 대우디오빌)	(주)이서에너지	여수시 낙포동 758-1번지	175.2	성토 및 공작물 설치	2025. 9. 17. ~ 2030. 12. 31.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9. 18.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 지정(변경)공고

여수시 울촌면 산수리 1058번지 외 1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변경)합니다.

1. 위 치 : 여수시 울촌면 산수리 1088번지 외 2필지
2. 도로면적 : 63m²
3. 도로길이 : 36.77m
4. 도 로 폭 : 1.62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2,619	57	
	울촌면 산수리	1061	전	661	9	
		1060-2	전	261	2	
		1088	전	1,706	46	
변경	계			2,628	63	
	울촌면 산수리	1061	전	652	6	
		1061-2	전	9	9	
		1060-2	전	261	2	
		1088	전	1,706	46	

※ 당초 도로 지정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1374호(2025. 4. 22.)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5. 9. 15.

여 수 시 장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남해서면~여수신덕 국도건설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9. 16.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2023. 07. 10 ~ 2031. 10. 30.까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남해서면~여수신덕 국도건설공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전라남도여수시 신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연장: L=8.080km ■ 폭 원: B=10.5~20.5m(4차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여수시청 도로과
- 열람기간 : 2025. 9. 16. ~ 2025. 9. 30.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 9. 16. ~ 2025. 9. 30.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 (☎061-659-4071)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5-276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봉산 퍼스트힐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공우

다. 시 공 자 : 지인종합건설 주식회사

라. 감 리 자 : 한려건축사사무소 배종수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봉산동 274-3번지 외 5필지

2) 대지면적 : 1,898.1㎡

3) 연 면 적 : 24,627.859㎡

4) 층 / 동 : 지하1층, 지상27층/1동

5)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6) 공사기간 : 2025. 9. 5.~ 2027. 11. 1.

7) 순공사비 : 49,000,000,000원

8) 안전점검 비용 : 64,995,559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2. 10. 21.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1종 시설물(3회), 초기점검(1회), 천공기(천공기 장비 높이 10미터 이상)(2회), 향타 및 향받기(2회), 타워크레인(8회),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2회),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2회),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2회),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합벽)(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148호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9. 17.(수) 10:00 ~ 9. 24.(수) 16: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5. 9. 26.(금)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5. 9. 29.(월) ~ 10. 2.(목)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10. 10.(금)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

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과(☎061-659-41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2. 공정표 1부(별첨).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5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5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체납 조정금을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나,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 후순위 법정상속인에게 조정금 부과 예정 알림 통지한 결과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
2. 공고기간: 2025. 9. 17. ~ 2025. 10. 1.(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읍촌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조정금 부과 예정 알림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5. 9. 17.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2024년도 지적재조사
돌산 평사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수취인 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불임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돌산 평사지구 295명
2. 공고기간: 2025. 8. 27.~2025. 9. 10.(15일간)
3. 공고장소: 여수시 시보, 홈페이지, 돌산읍 사무소 게시판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1, 3332, 3325, 3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불임 : 공시송달 조서 1부.

2025. 9. 17.

여 수 시 장

2025년 양식시설 현대화(용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2025년 양식시설 현대화(용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자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2025년 9월 26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17.
여수시장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융자금 지원 규모

- 총모집금액 : 1,000,000천원(융자금 800,000천원, 자부담 200,000천원)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
신 설	80억원이하	64억원이하	16억원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50억원이하	40억원이하	10억원이하

□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자담 20%

II. 신청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용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시 3년간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 다만, 신규로 허가 등을 받아 양식, 종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 전복산업의 수급안정 및 전복가두리 신규면허 제한에 따라 전복해상가두리 신규제작 사업자. 다만, 전복해상가두리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한하여 지원

Ⅲ.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 선정절차

-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용자지원규모 등 결정
- 사전 수요조사 신청자 우선순위 배정

□ 제출서류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 별지3호 서식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대출기관발급) - 별지 4호 서식
 - 금융거래 확인서
 - 자부담 확보 증명
 - 사업 견적서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추후 제출)

- 양식관련 면허증·허가증 사본
 - 육상해수양식 신축 및 수산종자생산업 증축 시 부지확보증명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5호 서식
 -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 별지11호 서식
 - 보조 및 융자 사업 이력서
-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10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

IV. 사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9. 17. ~ 9. 26. (10일간)
- 신청방법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방문 신청

국동항 내 무단 적치물 제거 공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동항 내에 방치되고 있는 무단 적치물로 인해 어항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적치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18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9. 18. ~ 2025. 10. 13. (26일간)
2. 위 치 : 신월동 112-41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철재 구조물 및 냉장고
4. 장애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 나. 아울러, 국동항 내에 적치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신월동 112-41		
적치물 종류	철재 구조물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785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신월동 112-41		
적치물 종류	철재 구조물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785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신월동 112-41		
적치물 종류	냉장고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785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신월동 112-41		
적치물 종류	철재 구조물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785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신월동 112-41		
적치물 종류	철재 구조물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785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신월동 112-41		
적치물 종류	철재 구조물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785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신월동 112-41		
적치물 종류	냉장고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785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체납 조정금을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나,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 후순위 법정상속인에게 조정금 부과 예정 알림 통지한 결과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35명(돌산 울림 7, 돌산 신복 21, 돌산 우두 7)
2. 공고기간: 2025. 9. 18.~2025. 10. 2.(15일간)
3. 공고장소: 여수시 시보, 홈페이지, 돌산읍 사무소 게시판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1, 3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공시송달 조서 1부.

2025. 9. 18.

여 수 시 장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공화동 837번지 외 8필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 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공화동 837	6	1	6	도로대장 참조	
공화동 836-79	3	1	3	도로대장 참조	
공화동 838-2	1	1	1	도로대장 참조	
수정동 702-25	4	1	4	도로대장 참조	

2.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과(061-659-4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

여 수 시 장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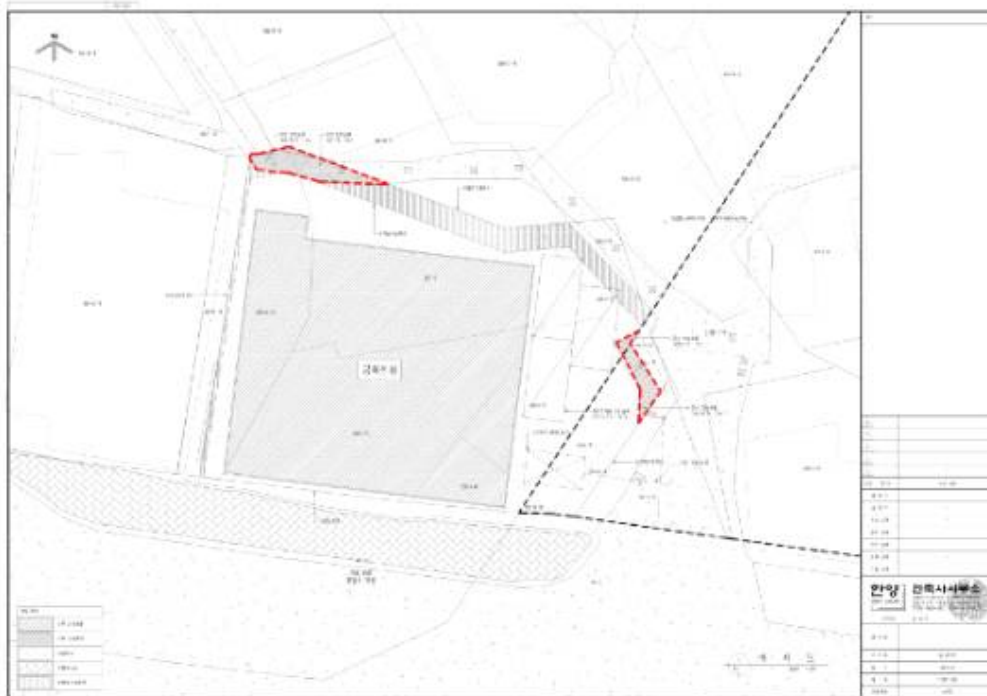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150, [] 1/1,200